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92
----------	-------

발의연월일 : 2026. 6. 17.

발 의 자 : 조배숙 · 강승규 · 고동진
김성원 · 정동만 · 박충권
곽규택 · 이만희 · 김재섭
송석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언의 자필성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유언의 전문(全文), 성명, 날짜, 주소 등을 유언자가 전부 손으로 직접 써야만 유효하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령자나 질병으로 자필 작성이 어려운 사례가 많고,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로 유언서를 작성한 후 출력해 서명하는 방식조차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사회 진입, 사망 전 준비에 대한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언장을 남기기가 어렵고 복잡하여 많은 국민이 유언 없이 사망하는 실정임. 이로 인해 상속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며, 디지털 환경을 활용한 새로운 유언 방식의 법적 인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언자가 PC 등 디지털기기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문서에 자필 서명·날인을 거치면 자필유언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아울러

러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에 있어서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된 공증에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68조제2항 신설 등).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6조의 제목“(自筆證書에 依한 遺言)”을“(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의 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 출력한 문서에 유언자가 서명하고 날인한 때에는 자필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06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공증인은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전자문서”라 한다)로 작성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공정증서가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유언자와 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66조제1항 단서 및 제1068조제2항과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또는 공정증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1066條(自筆證書에 의한 遺言)</p> <p>① 自筆證書에 의한 遺言은 遺言者가 그 全文과 年月日, 住所, 姓名을 自書하고 捺印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第1068條(公正證書에 의한 遺言)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p> <p>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의 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 출력한 문서에 유언자가 서명하고 날인한 때에는 자필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p> <p>② (현행과 같음)</p> <p>第1068條(公正證書에 의한 遺言)</p> <p>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공증인은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전자문서”라 한다)로 작성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공정증서가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되는</p>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유언자와 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